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비호 1352

제출연월일: 2019. 8. 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내 명칭 일부 변경과 관내 성동소방서의 신설 및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(안 제3조제3항)

- 국가정보원 조정관 →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
-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→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
- 성동구 지역 소방서장 → 성동소방서장
-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→ 서울교통공사 사장
- 나. 성동소방서의 신설과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정비 (안 별표 1,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제8조, 제18조
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9. 4. 18. ~ 5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대상 아님
 - 5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5호 중 "조정관"을 "통합방위담당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국군기무부대"를 "군사안보지원부대"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성동소방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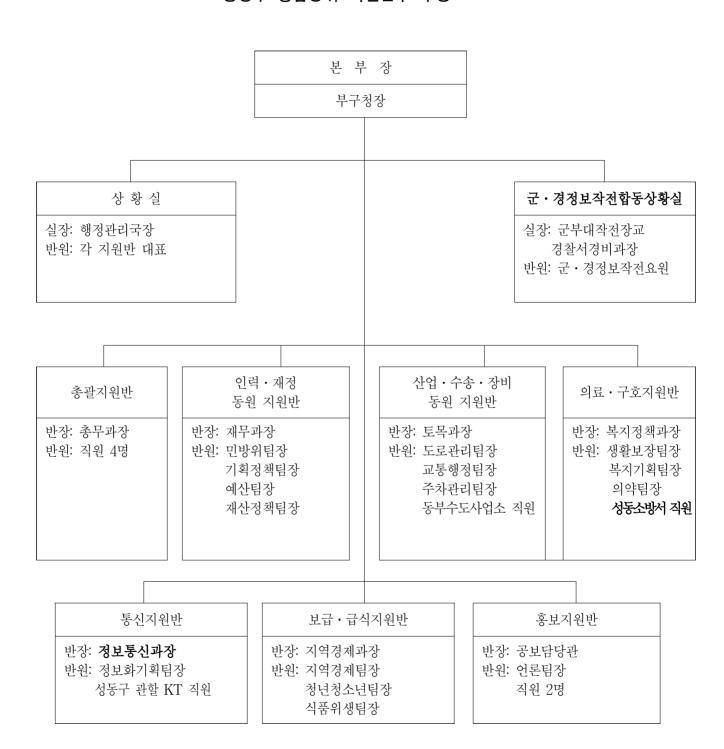
제3조제3항제11호 중 "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"를 "서울교통공사"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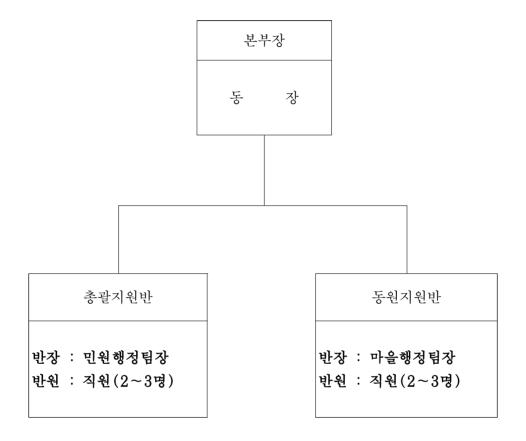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



[별표 2]

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

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	3
정한 사람으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국가정보원 <u>조정관</u>	5 <u>통합방위담당관</u>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성동구 지역 <u>국군기무부대</u> 의	7 군사안보지원부대
장 또는 담당관	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9. 성동구 지역 소방서장	9. 성동소방서장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11.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	11. 서울교통공사
장	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[별표 1]	[별표 1]
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	
의료・구호지원반	
기표 기오시컨턴	
반장: 복지정책과장 반원: 생활보장팀장	반장: 반원:
복지기획팀장	
의약팀장 서울 기업 사람의 지역	
성동구 지역 소방서 직원	성동소방서 직원

통신지원반 반장: <u>전산정보과장</u> 반원: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		반장: <u>정보통신과장</u> 반원:
[별표 2]		[별표 1]
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	성	
총괄지원반		
반장: 마을행정팀장 반원: 직원(2 ~3명)		반장: <u>민원행정팀장</u> 반원:
동원지원반		
반장: 기초복지팀장 반원: 직원(2 ~3명)		반장: <u>마을행정팀장</u> 반원:

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2항제3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○ 총무과 행정8급 임용택 (02-2286-5089)

< 관계법 규>

□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- 1. (생략)
- 2. 해당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- 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- 4. ~ 11. (생략)
- 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- 13. ~ 14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
제18조(통합방위 지원본보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)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 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 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·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- ③ ~ ④ (생 략)